

[일련번호 : 87]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미이행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제7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노무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착공계 제출시 사유서(전원 상용근로자 등)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일자리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대금 청구에 따른 지급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구분하여 지급하지 않고 일괄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지급현황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착공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가 전원 상용근로자 등 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노무비 지급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가 가능함에도, 사유서 징구 및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미이행 내역

연번	건명	공사기간	준공금액 (천원)	비고
1	○○공원 관리사무소 노후시설 정비	2023.5.31.~2023.12.28.	258,209	노무비 일괄지급 (구분지급 미확인)
2	○○공원 흙길 조성사업	2023.12.4.~2024.5.31.	114,750	노무비 일괄지급 (구분지급 미확인)
3	2024년 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연간단가)	2024.2.7.~2024.12.31.	134,500	노무비 일괄지급 (구분지급 미확인)
4	2023년 공원 내 흙길 조성 공사	2023.12.19.~2024.5.17.	139,150	노무비 일괄지급 (구분지급 미확인)
5	○○○ 힐링자연의 숲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2023.9.21.~2023.11.2.	53,380	노무비 일괄지급 (구분지급 미확인)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공사대금 지급 시 노무비 구분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